

의안번호	2217614
의 퇴 인	안호영 의원
회 답 일	2026. 4. 20.
추계번호	26A1560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 공공 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억 1,300만원, 2031년 1억 1,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억 6,500만원(연평균 3억 9,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안 제7조)	1,700	—	100	—	100	1,900	380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8조)	13	13	13	13	13	65	13
합 계	1,713	13	113	13	113	1,965	393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과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등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음. 이 경우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3	안 제9조(녹색공공투자은행의 설립 및 운영)	○ 국가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계획과 채권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제2항) ○ 녹색공공투자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0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완수 및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발전공기업들의 통합을 포함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의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1조(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예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지구 및 예비발전지구에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적이고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8항)	재량규정
6	안 제12조(주민 의견수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실사에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환경, 보건, 경관, 문화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민대표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3조(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함(제1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제5항) － 1.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지원 － 2.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 3. 에너지 복지 지원 － 4. 제11조제8항에 따른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의무규정
8	안 제14조(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 분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이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자신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제1항)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립한 법인 ○ 제1항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종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됨(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 생계 안정, 전직 및 재취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지원함으로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음(제4항) -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 - 2.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	
9	안 제15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및 운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발전지구에 대한 공동접속설비 시설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 설치·운영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	○	—
2	안 제8조(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
3	안 제9조(녹색공공투자은행의 설립 및 운영)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안 제10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X	
5	안 제11조(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예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X	
6	안 제12조(주민 의견수렴)	X	
7	안 제13조(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X	
8	안 제14조(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X	
9	안 제15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및 운영)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국·공유시설 재생에너지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시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참고로, 최근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5.12.)에 따르면, 국·공유시설 관련 통계는 “재생에너지 원별 용도별 보급용량”에 한해 일부 공개

되고 있음

- 동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2024년 누적 보급용량은 총 32,002,587kW이며 이 중 “발전사업용”이 27,382,319kW으로 85.6%를 차지하며, “가정용” 2,528,365kW(7.9%), “공공시설” 681,941kW(2.1%) 등임¹⁾

[표 2] 재생에너지 원별 용도별 보급용량(2024년 기준)

(단위: 해당 단위)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2023년 용도별 누적 보급용량	32,002,587	712,056	1,890,964
가정용	2,528,365	345,047	357,049
공공시설	681,941	96,464	860,920
교육시설	332,776	26,693	233,489
사회복지시설	70,456	125,347	74,142
산업시설	313,504	34,457	29,187
상업시설	350,987	35,201	43,529
발전사업용	27,382,319	—	—
기타	342,238	48,848	292,648

주: 재생에너지 중 일부만 표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25.12.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국가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지역계획)의 수립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때 비용추계 대상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하며, 2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은 2027년, 2029년, 2031년에 비용이

1) 이때 “공공시설”은 제정안의 “국·공유시설”과 정의 및 구체적인 범위가 다를 수 있음

발생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계획은 2027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본 비용추계서에 서는 광역지자체의 장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계획은 수립 시점마다 1억원, 지역계획은 2017년에 16억원(16개 시·도×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국가계획의 경우 현행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연구용역비(1억원)을 준용함
- 지역계획의 경우 유사 사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1억원), “강원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9,0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세종특별자치시, 2025년, 1억 600만원) 등이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2026.7.1.)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6개로 함

[표 3]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안 제7조)	1,700	—	100	—	100	1,900	3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8조)

□ 안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두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로 회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동 비용은 민간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함
- 다만, 안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의 경우 그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의 경우 전담기구인 사무국 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2억 2,900만원(기본경비 등) 수준임

□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300만원(13명×25만원×4회)으로 추계됨

○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민간인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안 제8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수로 함(안 제8조제3항)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각각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소유·운영하는 자
3. 기후환경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6조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수립
2. 국가계획 수립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이행 점검
3. 제11조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제
4. 제14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의무 이행 계획
5. 그 밖에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4]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안 제8조)	13	13	13	13	13	65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